

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여·변경·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6. 11.

## 양 주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327번길 185-48 외 3건

| 토지소재지 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<br>부여 고시일<br>(효력발생일) | 도로명주소<br>부여사유 | 도로명<br>고시일 | 도로명<br>부여사유 | 비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(별지참조)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
○ 도로명주소 변경 : 경기도 양주시 버들로 151

| 합병 전   |       | 합병 후  |       | 도로명주소<br>변경고시일<br>(효력발생<br>일) | 도로명주소<br>변경<br>부여사유 | 비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토지소재지  | 도로명주소 | 토지소재지 | 도로명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별지참조)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(031-8082-6372)로 문의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([www.yangju.go.kr](http://www.yangj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4. 6. 1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.